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38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 박정훈·박덕흠·김승수

이종욱 • 정성국 • 박충권

김위상 • 고동진 • 김소희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가 미흡한 상황임.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약처에서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SN S에서 일본 1위 관절약을 직수입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업체의 상품이 실제로는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제 체계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제효과도 낮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부하거나 정지·제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청소년과 고령자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정보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6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 <신 설> 위 ·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 시 · 광고 행위 등의 정보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2)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 부터 제6호까지-----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 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 를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 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 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후단 신설> -----. <u>또한</u>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